



공공재정환수법 적용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
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

2020. 1. 1. 이후
최초로 지급된
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
부정청구등부터 적용


부칙 (법률 제16323호, 2019.4.16.)

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

- 01 「국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관세법」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
- 02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 경우
- 03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
- 04 「국가계약법」 및 「지방계약법」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

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

공공재정 부
부정이익 환수

다른 법률 우선 적용 	01	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
	02	부정이익등의 환수
	03	제재부가금 부과
	04	가산금 및 체납처분
	05	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
	06	지급 중단, 환수, 제재부가금,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
	07	명단 공표
	08	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

예시



공공재정지급금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
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
보조금 · 보상금 ·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



부정청구등 유형



허위 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
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과다 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
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목적외 사용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
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

오지급

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처분



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

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

부정이익
환수
+이자포함

제재부가금
부과
x 최대 5배

고액부정청구등
행위자
명단공표

법의 실효성
확보장치

제재부가금 부과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제재부가금 :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

법 제9조 부정이익(+이자)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**5배 이내**

법 시행령 제5조

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**x5**

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**x3**

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**x2**

다만,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

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%

행정청의 과실 100%

행정소송, 이의신청, 소청심사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